

<별지 제3호의2> <신설 2009.7.6>

역외투자자문업 · 투자일임업 등록(변경등록)신청서

1.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·명칭 등

- 상호, 설립일, 자기자본·운용자산규모, 본점의 위치 및 명칭, 그룹 조직도 등 개황

■ 첨부서류

- 1-1. 정관(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 1부
1-2.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해당국가에서의 설립증빙서류 1부
1-3.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인에 대한 출자구조를 설명한 그룹 조직도 1부

2. 임직원에 관한 사항

직원수 : 명 임원수 : 명(상근: 명, 비상근: 명)

임원현황			
직위	성명	생년월일	주요경력

■ 첨부서류

- 2-1.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
2-2.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임직원직무수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서류 각 1부

3.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- 3-1.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(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, 종전에 영위하던 등록업무 단위와 추가하는 등록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.)
3-2.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, 종전 등록업무에 관한 등록확인서 1부
3-3. (일반투자자)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, 투자자문·일임계약서,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각 1부

4. 재무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- 4-1.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,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) 1부

※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-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5.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

-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 전문인력의 명단
(성명, 생년월일, 주요경력, 전문자격내용 등)

■ 첨부서류

- 5-1.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준하는 자격요건 및 관련증빙서류 각 1부

6.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- 6-1.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
6-2.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7. 연락책임자에 관한 사항 등

- 상 호, 대표자, 사무소 소재지, 영위업무, 해당 신청업무의 담당자 및 연락처

■ 첨부서류

- 7-1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
7-2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※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
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